

조문별 개정사유서

1. 금지물질 수입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(안 제14조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허가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공유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금지물질 수입, 판매허가시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, 환경부의 금지물질 허가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도록 규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지물질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안전관리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2.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(안 시행규칙 별표6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,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인력 자격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술인력 교육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('23→'28년까지)하고,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추가(환경위해관리기사, 표면처리산업기사 등)하고자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소기업의 화학전문 인력 확보에 기여하여 화학법령 이행력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3.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(별표6의2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 이수시기를 취급 전·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·후*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

* (기존, 단일) 취급전 16시간 → (개선안, 택1) 취급전 16시간 또는 취급전/후 각 8시간 (3개월 이내 이수, 6개월 미만 단기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개선안 적용 제외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취급담당자의 안전교육의 탄력적 운영 및 교육효과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

4. 금지물질 허가신청서 등(안 별지 제12호, 제48호, 제75호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금지물질 허가신청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금지물질 허가신청서 첨부서류란 개정(별지 제12호서식 개정)
- 도급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인용 근거 수정(별지 제48호 서식 개정)
- 화학물질 관리대장(양식)의 ‘용도’란을 ‘구매용도’로 명확화(별지 제75호서식 개정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업무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 사항 없음